국외출장 결과보고서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6">내 역</th></tr>
<tr><td rowspan="2">출장자</td><td>소속</td><td>수산연구본부</td><td>성명</td><td>최 순
이정미</td><td>직급</td><td>전문연구원
연구원</td></tr>
<tr><td colspan="6">□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td></tr>
<tr><td>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td><td colspan="6">❍ 출장목적 : IPEF 제7차 협상 지원
❍ 관련사업
- 「IPEF 해양수산분야 협상 전략」(수탁) (사업기간 : 2023.04.05. ~ 2023.12.08.)</td></tr>
<tr><td rowspan="2">관련사업
(예산항목)</td><td colspan="2">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td><td colspan="4">□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2">2023.11.04(토) ~ 2023.11.12(일)
(7박 9일)</td><td colspan="2">출장지</td><td colspan="2">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등급)</td></tr>
<tr><td rowspan="8">출장일정</td><td>일자</td><td colspan="2">방문지</td><td>주요업무*</td><td colspan="2">항공편</td></tr>
<tr><td>11.04(토)</td><td colspan="2">부산(10:25) →
인천(11:35) →
샌프란시스코(10:25)</td><td>항공 이동</td><td colspan="2">KE1414
KE023</td></tr>
<tr><td>11.05(일)</td><td colspan="2">• (전일)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 수산업 협상 분석</td><td colspan="2">현지 대중교통 이용</td></tr>
<tr><td>11.06(월)</td><td colspan="2">• (전일)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수산보조금 협상지원</td><td colspan="2">현지 대중교통 이용</td></tr>
<tr><td rowspan="2">11.07(화)</td><td colspan="2">• (오전)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노동 협상지원</td><td colspan="2" rowspan="2">현지 대중교통 이용</td></tr>
<tr><td colspan="2">• (오후)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환경 협상지원</td></tr>
<tr><td rowspan="2">11.08(수)</td><td colspan="2">• (오전)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환경 협상지원</td><td colspan="2" rowspan="2">현지 대중교통 이용</td></tr>
<tr><td colspan="2">• (오후)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노동 협상지원</td></tr>
<tr><td rowspan="2">11.09(목)</td><td colspan="2">• (오전)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환경/노동 협상지원</td><td colspan="2" rowspan="2">현지 대중교통 이용</td></tr>
<tr><td colspan="2">• (오후)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td><td>(필라1)노동</td></tr>
</table>

			협상지원	
	11.10(금)	• (전일) 제7차 IPEF 협상(Marriott Marquis)	협정문 초안 분석, 타 참여국 발언 분석	현지 대중교통 이용
	11.11(토)-12(일)	• 샌프란시스코(11:30) → 인천(19:35) → 부산(20:45)	항공 이동	KE024 KE142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내에 다수의 필라(Pillar, 분과)별, 주제별 회의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제7차 IPEF 협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분과별로 역할 분담하여 협상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양수산부 협상대표단 자문 ○ 주요 성과 - 해양수산분야 민감주제인 필라1 무역(Trade)의 (공통조항) 분쟁해결절차, (농업) 수산물 위생검역 협상 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및 해양수산부 협상대표단 자문, 협상 문안 검토 - 필라3 청정경제(Clean Economy) : 화석연료·수송보조금, 청정해운, 블루카본, 해양재생에너지 분야 협상 모니터링 및 자문 지원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IPEF 해양수산분야 협상 전략」연구 용역 보고서 수록 및 최종보고(11.23) 발표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IPEF 해양수산분야 협상 전략의 기초자료 활용 - 필러 3의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11.5.(일) 제7차 IPEF 협상지원**
수행계획	**<오전>** □ **제7차 IPEF 협상 수산업 분야 지원** **- 참 석 자 :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 IPEF 규범·협력사업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USMCA 및 CPTPP 규범 분석
	<오후> □ **제7차 IPEF 협상 수산업 분야 지원** **- 참 석 자 :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수산업 관련 국제규범 검토/참여국 동향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수행결과	□ IPEF 제22조 해면포획어업(Marine Wild Capture Fisheries)은 과잉어획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통해 각 국가가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노력에 대한 문안을 제시함 □ 회원국은 수산물의 주요 소비자, 생산자, 교역자로서 역할과 어촌 공동체 생계 관련 해면어업의 중요성, 특히 영세어업, 소규모어업의 중요성을 인식 □ 과학 기반 결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RFMO)와 합의(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Arrangements, RFMA)의 준수사항 지지 등 협력 의무 부과 □ 제23조 지속가능한 어업관리(Sustainable Fisheries Management)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 방지, 어구·어획 규제를 통한 부수어획 저감, 샤크피닝 관행 금지 등을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음 - (제1항) 해면어업 규율하는 수산자원관리제도(Fisheries Management System, FMS) 운영 의무를 부과(shall seek to operate)하면서, 구체적인 어업관리제도에 대해 명시함 - (제a호) 입어 제한, 금어기, 금어구, 어획량 또는 어획노력량 제한을 통한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금지 - (제b호) 부수어획 발생 가능성 있는 지역의 어업 규제 및 부수어획이 유발되는 어구 및 어법 제한을 통한 비목표종 또는 치어 부수어획 저감 - (제c호) 과잉어획어족 회복 증진 - (제d호) 어업의 중대한 부정적 영향 예방 또는 저감 위한 해양 서식지 보호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table>
<tr><td></td><td>- (제2항) 상업적 어업을 목적으로 독극물 및 폭발물 사용을 금지함
제23조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주요 내용
<table><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tr><td>제1항</td><td>In furtherance of the objectives of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each Party shall seek to operate a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hat regulates marine wild capture fishing and that is designed to:
(a) prevent overfishing and overcapacity through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limited entry, time, area, and other restrictions and the setting and enforcement of catch or effort limits;
(b) reduce bycatch of non−target species and juveniles, including through the regulation of, and implementation of measures associated with, fishing gear and methods that result in bycatch and the regulation of fishing in areas where bycatch is likely to occur;
(c) promote the recovery of overfished stocks for all marine fisheries in which that Party's persons conduct fishing activities; and
(d) protect marine habitat by cooperating, as appropriate, to prevent or mitigate significant adverse impacts from fishing.</td></tr><tr><td>제2항</td><td>2. Further, each Party shall adopt or maintain measures:
(a) to prevent the use of poisons and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fish harvesting; and
(b) designed to prohibit the practice of shark finning.</td></tr><tr><td>제3항</td><td>Each Party shall base its fisheries management system on the best scientific evidence available and o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est practices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conservation, as reflected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aimed at ensuring the 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species.20</td></tr></table>자료 : IPEF Modified Handing Authorized</td></tr>
<tr><td>업무②</td><td>11.6.(월) 제7차 IPEF 협상지원</td></tr>
<tr><td rowspan="2">수행계획</td><td><오전>
□ 제7차 IPEF 협상 수산보조금 분야 지원
- 참 석 자 :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USMCA 및 CPTPP 규범 분석</td></tr>
<tr><td><오후>
□ 제7차 IPEF 협상 수산보조금 분야 지원
- 참 석 자 :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규범 검토/참여국 동향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table>
<tr><td></td><td>· IPEF 규범·협력사업 민감분야 대응전략 마련</td></tr>
<tr><td>수행결과</td><td>
□ IPEF, USMCA, CPTPP, WTO의 수산보조금 범위는 동일하게 일반 해면어업 및 어업 관련활동을 포함하며, 양식어업은 제외함
□ 다만, IPEF는 양식어업과 더불어 내수면 어업, 정부간 입어협정에 따른 입어료 지원을 제외함
□ 4개 협정문은 과잉어획상태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과 기국과 RFMO/A가 지정한 IUU 어선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 유형으로 분류함
□ USMCA는 IUU 어선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함
협정문별 수산보조금 정의 비교
<table>
<tr><th>구분</th><th>IPEF</th><th>USMCA</th><th>CPTPP</th><th>WTO</th></tr>
<tr><td rowspan="2">적용 범위</td><td colspan="4">일반 해면어업 및 어업관련활동</td></tr>
<tr><td>예외1) 양식어업(각주 19)
예외 2) 내수면 어업(각주 25)
예외 3) 정부간 입어협정에 따른 입어료 지원(각주 27)</td><td>예외) 양식어업 (육상 및 해상가두리양식)</td><td>예외) 양식어업 (육상 및 해상가두리양식)</td><td>예외) 양식어업 (육상 및 해상가두리양식)</td></tr>
<tr><td rowspan="2">금지 보조금 유형</td><td colspan="4">과잉어획상태 어종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보조금</td></tr>
<tr><td>기국과 RFMO/A가 지정한 IUU 어선에 지급되는 보조금</td><td>기국과 RFMO/A가 지정한 IUU 어선 및 운영자에 지급되는 보조금</td><td>기국과 RFMO/A가 지정한 IUU 어선에 지급되는 보조금</td><td>기국과 RFMO/A가 지정한 IUU 어선에 지급되는 보조금</td></tr>
</table>
□ IPEF 수산보조금에서 '강제노동 정보 공개 의무'를 처음으로 검토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다수 국가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부적절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미국, 호주, 뉴질랜드, 피지는 국제 환경보호, 공정경쟁 문제 해결, 어족자원 회복 차원에서 수산보조금 제한을 찬성함
□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 국가는 IPEF 회원국만 수산보조금 제한할 경우 규제적 효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WTO로 164개 국이 수용해야 실효성이 가진다는 의견을 제시함.
</td></tr>
<tr><td>업무③</td><td>11.7.(화) 제7차 IPEF 협상지원</td></tr>
<tr><td>수행계획</td><td>
<오전>
□ 제7차 IPEF 협상 (필라1)노동　분야 지원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USMCA 및 CPTPP 규범 분석
</td></tr>
</table>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오후> **□ 제7차 IPEF 협상 (필라1)환경 분야 지원**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규범 검토/참여국 동향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수행결과	□ 필러 1의 노동기준은 △ CPTPP 또는 CPTPP plus 수준, △ ILO 국제노동기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 있음 □ 협상 참가국 중 CPTPP 당사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이미 수용한 CPTPP 노동규범을 IPEF에 반영하는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시장 접근에 대한 참여국의 혜택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에게 CPTPP보다 높은 USMCA 수준의 노동 규범 수용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단, 노동 기준에서 CPTPP plus 수준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강제노동 문제임.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를 국제무역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IPEF 노동 규범에서 상품 단위의 수입규제 의무까지 반영되지 못하더라도 ILO 노동기본권선언 인용편입 조항을 통해 노동기본권으로서의 '강제노동철폐' 원칙에 근거하여 미국이 IPEF 참여국의 제도 전반 차원에서 강제노동 규제를 일정 수준까지 요구할 수 있음 □ 2022년 9월 공동각료선언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및 ILO 노동기본권선언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유지집행"을 IPEF 노동기준에 반영할 것임에 합의가 이뤄진 상태임
업무④	**11.8.(수) 제7차 IPEF 협상지원**
수행계획	**<오전>** **□ 제7차 IPEF 협상 (필라1)환경 분야 지원**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USMCA 및 CPTPP 규범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오후>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 **제7차 IPEF 협상 (필라1)노동 분야 지원**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규범 검토/참여국 동향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수행결과	□ IPEF 환경 의제 관련해서 수산자원관리, IUU 어업, 해양생물종 보호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내적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법제 정비할 보완할 사항을 제시함 □ RFMO 협력 의무 규정 - RFMO의 협력 의무에 관해서 RFMO의 범위를 각국이 가입한 RFMO/A의 보존관리조치로 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나, RFMO가 설립되지 않는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남동대서양(FAO 41해구)에서 오징어 트롤, 이빨고기 저연승 등 약 30여척이 조업하고 있음 - 동 해역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으로 RFMO/A가 설립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임 -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 RFMO가 설립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또는 회원국간 RFMO 설립을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도록 함 □ IUU 어업에 관한 규정 - X.24조 f항의 기국 어선 등록 데이터 접근 및 어선(냉동선, 운반선)에 관한 데이터 공개에 관해서는 국내 규정이 없음 - 기국 어선 및 어선에 관한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 - 어선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법 제9조 제1항 제3호) - 또한 운반선에 관한 정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업무⑤	**11.9.(목) 제7차 IPEF 협상지원**
수행계획	**<오전>** □ **제7차 IPEF 협상 (필라1)환경/노동 분야 지원**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USMCA 및 CPTPP 규범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오후> **□ 제7차 IPEF 협상 (필라1)노동 분야 지원**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각료선언문 및 협정문 초안 분석 · 수산보조금 관련 국제규범 검토/참여국 동향 분석 · 타 참여국 발언·제안 분석
수행결과	□ IPEF 노동챕터의 강제노동 수입금지 규정은 미국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자국 법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분쟁대비) 미국내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조치(관세법 307조)에 대비하여 국제법상(GATT) 원칙 위배에 대한 법적 검토자료 확보가 요구됨 - 이미 다수국에서 강제노동 수입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WTO규범에 위배 될 수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확보를 통해 향후 대비가 필요함 - (협상전략) IPEF 협정문에서 어선을 언급한 사안과 관련하여 인권확립을 위한 제도 강화 등의 법제도 개선은 수용하나 강제노동 수입금지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규범 수용에 대해서는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조항 적용의 연착륙이나 조정·완화된 협상 전략 기조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추가 가능성) 다자간 규법협정은 국가간 상이한 행정체계, 산업역량 등의 여건으로 의견합치에 제한적 요소가 많으므로, 다자간 국제규범 확립을 표방하는 IPEF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자간 협정을 통해 법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IPEF 환경 의제 관련해서 수산자원관리, IUU 어업, 해양생물종 보호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내적으로 법률에 기초하여 관련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법제 정비할 보완할 사항을 제시함
업무⑥	**11.10.(금) IPEF 협정문 수산분야 문안 협상**
수행계획	**<오전>**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 **제7차 IPEF 협정문 초안에 대한 문안 협상 진행**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IPEF 규범·협력사업 민감분야 대응전략 마련 · (공통조항) 분쟁해결절차 규범분석 및 협상전략 수립 · (농업) 제22조 해양수산조항 관련 협상지원 및 전략 수립
	<오후> □ **제7차 IPEF 협정문 초안에 대한 문안 협상 진행**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오성택 사무관, KMI 최순 전문연구원, 이정미 연구원** · 우리측 발언 및 문안·제출 의견 검토 · (환경) 수산보조금, 지속가능한 어업 규범분석 및 협상전략 수립 · (수산) 수산물 위생검역 규범분석 및 협상전략 수립 · (노동) 강제노동 상품 수입금지, 개별사업장 검증 규범분석 및 협상전략 수립
수행결과	1. X.11조(인증) (1)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 당사국이 SPS 증명 요건을 부과하기 전 (a) 국제 표준, 지침, 권고사항에 기반하거나, (b)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상황에 적절하도록 보장해야 함 □ 제품의 품질 또는 소비자 선호와 관련된 SPS에 대한 증명 요건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 상황에 적절한 증명 요건으로 간주하지 않음 □ 만일 수입국이 식품 및 농산품의 무역에 대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당사국은 해당 증명 요건이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도록 보장함 □ 당사국은 특정 상품의 거래를 용이하도록 특정 상품에 동반되는 증명서 견본을 개발하거나,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증명서 또는 관련 기술을 적용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IPEF SPS 규범 X.11조

원문내용
2(b).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 is appropriate to the circumstances of risks to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at issue. (Footnote):Forgreatercertainty,acertificationrequirementconcerningnon-sanitaryorphytosanitaryrequirements,includingthequalityofaproductorinformationrelatingtoconsumerpreferences,doesnotconstituteacertificationrequirementappropriatetothecircumstancesofarisktohuman,animal,orplantlifeorhealth. 3. If an importing Party requires certification for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goods], that Party shall ensure that the certification requirement is applied, in meeting the Party's sanitary or phytosanitary objectives,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protect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7. The Parties may decide to work cooperatively to develop model certificates to accompany specific goods traded between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guidance or decisions of the WTO SPS Committee an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guidelines, or recommendations.

자료 : IPEF Modified Handing Authorized

2. 투명성: Appl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1) 주요 내용 및 쟁점사항

- ▫ SPS 조치가 불공정하거나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의 작용됨을 인정하고, 비 SPS 조치를 포함한 비관세 조치는 식품 및 농산물의 국제 무역을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함
- ▫ 당사국은 WTO 협정 또는 본 협정(IPEF)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규정을 제외한 어떠한 비 SPS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도록 함
- ▫ 각 당사국은 비 SPS 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당사자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준비, 채택해야 하며 또한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을 제안하였음
- ▫ 기술 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 규정이 이행하려는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현지 협상진행에 따라 내용 상이할 수 있으며 대외비 포함되어 공개가능한 내용을 작성하였음.

	IPEF SPS 규범 Application of Non-tariff Measures(안)
	원문내용
	NZ:1.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rade barriers arising from unjustified or unnecessary non-tariff measures, including non-SPS measures (footnote) can pose a key concern for international trade in food and agricultural goods, and can have economically negative consequences. AU:1. A Party shall not adopt or maintain any non-SPS measure except in accordance with it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WTO Agreement or this Agreement. AU:2. Each Party shall ensure the transparency of its non-SPS measures and shall ensure that any such measure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the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trade among the Parties. NZ:3. To ensure transparency of its technical regulations, each Party shall, on request of an exporting Party,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objective that its technical regulation is intended to fulfil.
	자료 : IPEF Modified Handing Authorized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